

군용물자 수출통제 절차개선 연구

조윤경, 양정은, 유나영, 김수현, 장일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Improvement of Defense Materials Export Control Process

YunGyeong Cho, Jeong-Eun Yang, Na-Yeong Yu, Soo-Heon Kim, Il-Ho Cha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Defense Technology Planning and Advancement

요약 군용물자에 대한 수출통제는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을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는 1975년 국제 조약에 처음 가입하였으며, 가입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내입법을 통해 군용물자를 통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방위산업 진흥에 힘입어 현재 무기수출 시장점유율 10위, 국방과학기술 수준 9위를 차지하였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용물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무허가 수출, 기술유출 등의 문제를 증가시킬 수 있어 수출시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수출통제 규정 및 통제목록 분석을 통해 국내 수출통제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방산물자의 경우 수출업·중개업 신고 후 중요도에 따라 주요/일반으로 구분되어 허가 절차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군용 전략물자의 경우 수출 수출업·중개업 신고 없이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에 의한 국가 신용도 하락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편, 수출허가 절차에 있어서, 군용 전략물자는 중요도에 따른 구분 없이 모두 같은 절차로 허가가 진행되어, 위성체계 등 기술수준이 높은 품목이 수출될 경우 기술검토가 부실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군용 전략물자 수출허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국방기술 통제목록 개선안 활용 및 관련 법령개정을 통하여 허가절차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기술 통제목록 개선안에 주요 방산물자 해당 항목을 반영하여 군용 전략물자를 중요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며,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군용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업·중개업 신고제도를 제도권 안으로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Export control on military materials began when the US-led 'Multilateral Export Control Coordination Committee' was launched to ensure the non-proliferation of weapons. Korea joined the international treaty for the first time in 1975, and to fulfill its obligations as a member state, Korea is controlling military supplies through domestic legislation. Thanks to the promotion of the defense industry, the Republic of Korea currently ranks 10th in the arms export market share and 9th in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As Korea's global demand for military supplies increases, problems such as unauthorized exports and technology leaks may increase. So, preemptive measures are needed to protect exports systematically. In this study,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domestic export control system were presented by analyzing the domestic and foreign export control regulations and control lists. By reflecting on the relevance of the major defense technology control list improvement plan, strategic military materials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importance.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it is believed that the export·brokerage report system for military strategic materials can be introduced into the system.

Keywords : Export Control, Strategic Material, Defense Technology Control List, Export Business, Export Permission

*Corresponding Author : Il-Ho Chang(Korea Research Institute for Defense Technology Planning and Advancement)
email: ihchang610@dtac.re.kr

Received October 1, 2021

Accepted November 5, 2021

Revised October 13, 2021

Published November 30, 2021

1. 서론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는 각국의 군비 확산 방지, 제한, 감축 및 폐기를 통해 국제적인 안보와 평화를 위한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을 목적으로 규제하는 체제이다. 각국은 다자간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통제목록과 자국의 정책을 반영하여 군용물자 수출통제목록을 관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수출통제는 1975년부터 국제수출통제 조약 및 체제에 가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가입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내입법을 통해 수출품목을 통제하고 있으며,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등을 근간으로 방위사업청에서 군용물자 수출 통제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18년 국방과학기술 수준 9위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1]. 이에 따라 방산수출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무기수출 시장 점유율이 10위까지 상승하였다[2]. 국내 군용물자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통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미얀마 포탄 제조기술 및 설비 불법 수출[3]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수출업체에 대한 관리부족 및 수출업체의 관련업무 이해도 부족 등으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용물자 수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방산 선진국인 미국, 영국과 국내의 군용물자 통제목록, 관련 법령 및 절차 등을 비교·분석하여 방위사업청에서 허가하는 군용 전략물자 수출·입 업체 신고제도 및 수출통제 절차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본론

2.1 미국 수출통제체제

2.1.1 군용물자 관련법령

미국의 군용물자는 군 관련 수출통제 최상위 법령인 무기수출통제법(AECA : Arms Export Control Act)과 그 하위규정인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을 근거로 통제되고 있다 [4]. 무기수출통제법은 무기 판매, 대여 및 허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무기거래규정은 군용물자품목 목록(USML : U.S. Munition Lists), 제조 및 수출업체 등록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군용물자품목은 국제무기거래규정 제121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무기체제에 따라 화기, 근접공격무기 및 잠수함 관련 품목까지 22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다. 22개의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물자는 모두 군용품목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군용물자는 중요도에 따라 Fig. 1과 같이 군용품목, 주요군사장비 및 중요군사장비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정의는 Table 1과 같다. 군용품목 중 주요군사장비는 군사적 유용성 또는 성능이 높아서 특별한 수출통제가 필요한 품목으로, 군용물자목록 앞에 별표(*)로 표시되어 있다. 중요군사장비는 주요군사장비 중 개발비나 생산비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를 말하며, 특히 1,400만 달러 이상의 중요군사장비 등을 수출할 경우 의회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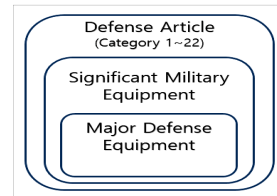


Fig. 1. Classification of U.S. Munitions List

Table 1. Definition of U.S. Munitions List

Classification	Definition	Content
Part 120.6	Defense Article	any item or technical data designated in 121.1
Part 120.7	Significant military equipment(SME)	articles for which export controls are warranted because of their capacity for substantial military utility
Part 120.8	Major defense equipment(MDE)	any item of significant military equipment on development cost of more than \$50 million or total production cost of more than 200 million

2.1.2 수출업체 신고제도

미국에서 군용품목의 제조, 수출입 및 국방용역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방교역통제국(DDTC : The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미국 내의 주식회사를 소유하거나 사업 권한을 승인받은 자에 한한다. 사업승인에 대한 입증은 등록신청서에 미국인 임원의 서명이나, 외국인이 소유하는 경우 권한대행 임원의 증명서로 할 수 있다. 등록 신청서에는 일반정보(주소, 최고경영자 등), 생산/제조 품목의

미 군용물자품목 해당여부 등을 기입하여 제출하며,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등록비를 매년 납입해야 하는데, 이는 등록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영국 수출통제체제

2.2.1 군용물자 관련법령

영국은 군용 및 이중용도품목을 통제하기 위해 수출통제법 2002 (Export Control Act 2002)를 제정하였으며[5], 시행령으로 수출통제 명령 2008 (The Export Control Order 2008)을 발효하였다[6]. 수출통제 명령 2008에는 군용통제목록, 폭발관련 통제목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의 군용통제목록은 수출통제 수준에 따라 카테고리 A, B 및 C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카테고리 A는 집속탄, 폭발성 잠수함 등 수출을 금지하는 품목을 뜻하며, 카테고리 B는 경무기 및 경무기용 탄약 등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는 품목과 그 외 물품인 카테고리 C가 있다. 각 품목에 대한 세부분류는 수출통제 명령 2008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5].

Table 2. UK Trade Control Classification

Category	Principle	Subject of Control
Category A	Goods for which you cannot arrange sales or movement	Gallows and guillotines, etc.
Category B	Goods subject to strict trade controls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within ML1 and ML2, etc.
Category C	Other items	Military goods other than Category A and B goods

2.2.2 수출업체 신고제도

영국에서 Table 2의 카테고리 B, C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수출입을 위해서는 국제무역부(DIT :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로부터 기업등록 및 식별 번호인 EORI :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Identification 번호를 받은 후, 수출품목의 수준에 따라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 라이선스 획득을 위해서는 국제무역부, 외무부(FCO :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국방부(MOD : Ministry of Defense)로 이뤄진 수출통제합동부서(ECJU : Export Control Joint Unit)에서의 평가를 거치게 된다. 국제무역부에서는 수출품목의 통제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며, 외

무부는 수출국 및 최종 사용자, 국방부에서는 수출품목에 대한 안보 및 보안 측면에 대해 평가한다. 이후 국제무역부 산하기관인 수출통제기관(ECO : Export Control Organization)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게 된다.

군용물자 관련 라이선스는 개방일반, 표준개별, 개방개별로 분류되며 종류별로 범주는 Table 3과 같다. 개방일반 라이선스는 Table 2에서 분류한 폭탄, 로켓 등 카테고리 B의 일부품목 및 카테고리 C 품목을 수출하고자 할 때, 목적지와 사용용도에 대해 평가되며, 표준개별 라이선스는 개방일반에서 통제하는 품목외의 카테고리 B 상품에 대해 수량, 가치(금액), 최종사용자에 대해 평가된다. 개방개별 라이선스는 국제 프로젝트 등 장기계약 또는 반복 수출과 같은 경우에 발행받아야 하는 라이선스로, 품목 및 수출지에 대해 허가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수출에 필요한 라이선스는 국제무역부 전산 시스템인 스파이어의 분류 조언 서비스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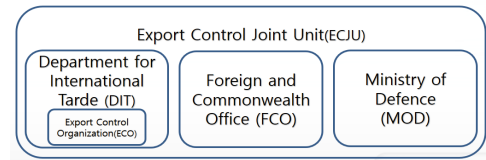


Fig. 2. UK Export Agency

Table 3. UK Licences

License	Explain
Open General	• End-user and purpose verification required
Standard Individual	• Necessary for exporting designated items such as chemical weapons raw materials • Limited quantity and amount
Open Individual	• Required when exporting certain items to certain countries

2.3 대한민국 수출통제체제

2.3.1 군용물자 관련법령

국내 군용물자 수출통제 법령은 Table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방위사업법[8]에 통제를 받는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및 대외무역법[9]에 통제를 받는 전략물자로 나눌 수 있다. Fig. 3은 군용물자에 대한 분류이며, 이에 대

한 정의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군용물자에 대한 분류는 Table 5와 같다. 방산물자는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필요로 하는 물자로 주요와 일반 방산물자로 분류할 수 있다. 주요 방산물자는 유도무기 등 무기체계로 분류되어 군사 전략 또는 전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물자이며, 일반방산물자는 그 외의 방산물자이다. 방산물자 현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과학기술은 군사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기술을 뜻한다.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품목으로 산업 및 군수용으로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과 군용물자품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Table 5는 사용용도(end user, 최종사용자)에 따른 전략물자 허가기관을 나타내었으며, 산업용은 산자부의, 군수용은 방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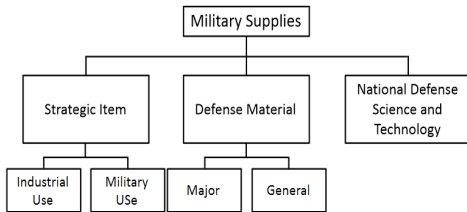


Fig. 3. Defense Material Classification

Table 4. Definition of Defense Material/National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and Strategic Item

Subject		Definition
Strategic Item	Industrial Use	Strategic goods are goods that require require restrictions such as export licenses for international peace, safety and national securit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Military Use	
Defense Material	General	Materials falling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5(2) of the Act shall be the major defense materials pursuant to Article 34(2) of the Act, and other defense materials shall be general defense materials
	Major	Article 35(2) of the Act 1. Firearms and other fire pover weapons 2. Guided Weapons 3. Aircraft 4. Vessels 5. Ammunition 6. Tanks, armored vehicles and other mobile combat equipment

	7. Radars, identification friend or foe, and other communication and electronic equipment 8. Night observation devices and other optical or thermal imaging devices 9. Combat engineering equipment 10.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warfare equipment 11. Command and control systems 12. etc.
National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Science and technology necessary to develop·manufacture·operate·improve·remodel·test·measure·etc. munitions to use for military purpose

Table 5. Classification of Military Materials according to related Laws

Law	Classification		Responsible Department
Foreign Trade Act	Dual Use Item	Industrial Us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litary Use	
	Military Supplies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Defense Material		
	National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2.3.2 수출허가 절차 및 업체 신고제도

군용물자의 수출허가 절차는 Fig. 4와 같다. 방산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업·중개업 신고서를 방사청에 제출하여 신고 확인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주요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을 수출 또는 국제입찰참가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참가승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예비승인은 기술의 원천, 수출 시 파급효과, 기술수출 통제목록 여부 등에 대해 검토된다. 반면, 국제입찰참가승인의 경우 국제평화 및 안보 저해여부 등에 대해 평가된다. 일반 방산물자의 경우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허가절차와 동일하나,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참가승인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

한편, 군용 전략물자의 경우 방사청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업체에서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허가 시에도 품목의 중요도에 관계없이 승인절차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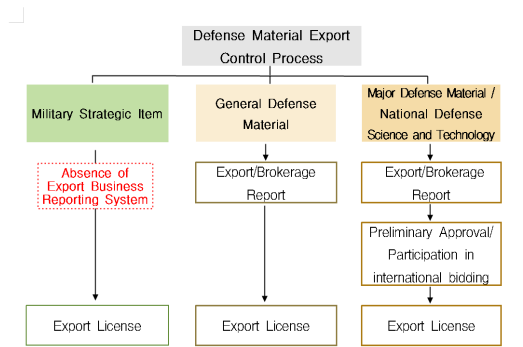


Fig. 4. Permission Process according to Export Control Object

2.4 차이점 분석

국내·외 수출허가제도 및 절차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영국은 수출 전 등록을 통해 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방산물자(일반/주요)는 미·영국과 유사하게 수출업·중개업 신고 제도를 통해 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군용 전략물자의 경우, 수출업·중개업 신고 없이 수출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에 의한 국가 신용도 하락, 업체 자격관리 부재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음은 수출허가 절차에 대하여 살펴본다. 미국과 영국은 Table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중요도에 따라 군용물자를 분류하여 통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방산물자를 주요와 일반으로 분류하여 등급체계는 달라도 미국이나 영국의 체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용 전략물자는 중요도에 따른 구분 없이 모두 같은 절차로 허가가 진행된다.

따라서 군용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제도도 중요도에 따라 절차를 이원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6. Classification of Export Control Products

Country	U.S.	UK	Korea
Classification	Defense Article / SME / MDE	Category A / B / C	General / Major Defense Material & Strategic Item

2.5 개선안

군용 전략물자 수출업체 신고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 허가 등) 1항 수출업·중개업 신고제도에 전략물자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군용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는 방산물자와 다르게 중요도에 따른 분류 없이 모두 같은 절차로 허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요 품목에 대한 기술유출 가능성 및 수출제한품목에 대한 검토가 부실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민수에서 개발된 위성체계 기술이나 고정밀 광학기술이 포함된 조준경 등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이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방산물자와 같이 주요와 일반으로 구분한 수출허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군용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시 수출국과의 관계, 중요 기술, 다자간 수출통제체계 민감 유무 등이 검토되는데,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3년마다 발간하는 국방기술 통제목록을 참고로 활용하고 있다 [10]. 국방기술 통제목록은 기술과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분류한 기술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기술로 분류된 현재 국방기술 통제목록은 수출품목에 적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요도에 따른 분류는 비문으로 관리되어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다행히도, '21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방기술 통제목록을 바세나르체제의 군용물자품목 기준과 유사하게 품목 단위로 개선할 필요성과 구성양식을 제시하였다[11]. 개선안의 구성양

Table 7. Defense Technology Control List Improvement Proposal

Middle Class	Subcategory	Subdivision	Item name	Structure Level	ML Number	Designated Items for Major Defense Materials	Item Specification
Ammunition	Fire extinguisher	Small bore	Coplete	1	ML3.a	O	
			Cartridge case	2	ML3.a.	-	
			Propellant	3	ML4.a.	O	
			⋮	⋮	⋮	⋮	

식은 Table 7과 같으며, 주요방산물자는 해당 항목에 표기(o)하도록 되어있다.

차기 발간될 국방기술 통제목록에 연구 결과의 구성양식이 적용된다면 군용 전략물자를 주요와 일반으로 쉽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류된 군용 전략물자를 방산물자 허가절차(Fig. 3)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일반 군용 전략물자는 현 체계와 동일하게, 주요 군용 전략물자는 수출허가 승인절차가 강화되어, 기술유출이나 수출제한 품목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6 관련법령 개정안

전략물자를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절차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의 경우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 허가 등) 1항에 의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용 전략물자의 경우는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군용 전략물자도 수출업·중개업 신고제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즉, 방위사업법 제57조1항에 군용 전략물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방산물자 뿐만 아니라 전략물자 수출업체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업체에 대해 방위사업법 통제하에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위사업법 제57조 3항에 주요로 분류된 군용 전략물자를 포함하고, 주요와 일반에 대한 분류는 국방기술 통제목록에서 식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군용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은 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은 수출입 등록 후 수출허가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인절차 또한 중요도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다. 반면, 군용 전략물자의 경우 업체 등록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으며 주요품목에 관계없이 동일한 절차로 수행되고 있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에 의한 국가 신용도 하락 및 주요품목에 대한 기술검토가 부실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영국의 수출허가제도 및 절차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군용 전략물자의 수출업·중개업 신고제도와 절차를 방산물자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방위

사업법을 개정하면 효율적인 수출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가 제도적으로 반영되어 수행된다면 군용 전략물자 수출업체에 대한 자격관리로 국가 신용도 하락 방지 및 체계적인 후속 군수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출허가 시 중요도에 따른 절차를 이원화함으로써 행정 소요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부실 검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1] Defense Science & Technology Level Assessment by Country, p717,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DTaQ), 2018.
- [2] Global Defense Market Yearbook 2020, p24,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DTaQ), 2020.
- [3] Illegal Export of Artillery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Equipment Caught, Available From: <http://www.spo.go.kr/site/seoul/ex/board/List.do>
- [4] Arms Export Control Act, Available From: <http://www.pmdtc.state.gov/ddtc-public>
- [5] Export Control Act 2002, Available From: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2/28/contents>
- [6] The Export Control Order 2008, Available From: <http://www.legislation.gov.uk/ukxi/2008/3231/contents>
- [7] The Export Control Organisation's Online Export Licensing System, Available From: <http://www.spire.trade.gov.uk>
- [8]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2021
- [9] Foreign Trade Act, 2021
- [10] The List of Export Communications of Defense Technology, 2020
- [11] Soo-Heon Kim, Min-Chul Kim, Il-Ho Chang,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fense Technology Control List linked to the Wassenaar Agreement Munition Lis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Defense Technology Planning and Advancement(KRIT),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pp.359-362, 2021.

조 윤 경(YunGyeong Cho)

[정회원]



- 2015년 2월 : 광주대학교 화학과 (학사)
- 2017년 2월 : 광주대학교 화학과 (석사)
- 2017년 9월 ~ 2019년 8월 : 국방과학기술품질원 연구원
- 2019년 8월 ~ 2020년 12월 : 국방기술품질원 근무
- 2021년 1월 ~ 현재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략물자 수출통제

김 수 현(Soo-Heon Kim)

[정회원]



- 199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사)
- 200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수료)
- 1995년 12월 ~ 2020년 12월 : 국방기술품질원 책임연구원
- 2021년 1월 ~ 현재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책임연구원

<관심분야>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략물자 수출통제

양 정 은(Jeong-Eun Yang)

[정회원]



- 2012년 2월 : 한국해양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학사)
- 2016년 2월 : 한국해양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석사)
- 2015년 5월 ~ 2020년 12월 :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
- 2021년 1월 ~ 현재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기술기획, 국방기술, 기술평가, 제어계측

장 일 호(Il-Ho Chang)

[종신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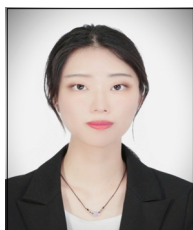
- 1992년 2월 : 전남대학교 금속공학과 (석사)
- 2005년 8월 : 충남대학교 금속공학과 (박사)
- 1992년 4월 ~ 2020년 12월 : 국방기술품질원 책임연구원
- 2021년 1월 ~ 현재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책임연구원

<관심분야>

방산기술 보호, 군용 수출통제, 탄약 저장수명, 재료공학

유 나 영(Na-Yeong Yu)

[정회원]



- 2019년 2월 : 부산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 2019년 8월 ~ 2020년 12월 :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
- 2021년 1월 ~ 현재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기술보호, 산업공학, 기술기획